

##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의 수출입요건 변경 안내 - 세관장 확인대상 조정 등 -

관세청은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고, 통관단계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인 품목에 대하여 세관장 확인대상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I. 개요

#### 1. 개정사유

- 세관장확인대상 운영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실시 중인 수요조사와 제출(요청) 서식을 명문화하고 세관장 확인 지정(변경)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개별 법령 개정 등 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통관 단계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세관장확인대상 조정 필요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규정 및 용어 정비

### II. 주요 개정내용

#### 1.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관련 절차 명문화 및 개선 (제8조 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설)

- 관계 부처 대상 세관장확인 물품의 수요 파악 및 현행화를 위해 아래 규정 신설
  - 정기 수요조사 실시 명문화 (매년 11월, 긴급한 경우에는 수요조사 기간이 아니어도 요청 가능)
  - 수요조사 시 공문으로 제출받고 있는 내용을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요청서로 서식화
- 세관장이 세관장확인 중 신규 지정 및 품목분류 등으로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 2.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현행화 (별표2 개정)

-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의 범위 현행화
  - 「약사법」관련 대상 물품에 첨단바이오 의약품 포함 명확화
-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의 구비요건 현행화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관련 세관장확인 구비요건을 한국석유화학협회의 수입확인서로 현행화

### 3.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변경 (별표 1 · 별표 2 개정)

- HSK 2022 개정사항 미반영 품목과 기관 요청 · 협의사항 반영 등
  - (수출) 6개 법령 5개 품목 추가, 353개 품목 변경, 18개 품목 제외
  - (수입) 16개 법령 29개 품목 추가, 442개 품목 변경, 65개 품목 제외

구분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변경사항
수출	13	1,212 (1,427)	<b>1,201</b> <b>(1,414)</b>	· 6개 법령 - (품목) 5개 추가, 353개 변경, 18개 제외
수입	40	4,818 (7,651)	<b>4,791</b> <b>(7,615)</b>	· 16개 법령 - (품목) 29개 추가, 442개 변경, 65개 제외

\* HSK 품목번호 기준, ( )는 법령별 산정

\*\* 법령별 상세 변경내용은 붙임 신규대조표 참고

### 4. 관세청 통관포털 이용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추가 (별표 3 개정)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해당 물품 추가

현 행	개 정																				
<p>【별표 3】 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가. 수입물품</p>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th> <th>대상업무</th> </tr> </thead> <tbody> <tr> <td>〈신 설〉</td> <td>〈신 설〉</td> </tr> <tr> <td>〈신 설〉</td> <td>〈신 설〉</td> </tr> </tbody> </table> <p>나. 수출물품</p>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th> <th>대상업무</th> </tr> </thead> <tbody> <tr> <td>〈신 설〉</td> <td>〈신 설〉</td> </tr> </tbody> </table>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신 설〉	〈신 설〉	<p>【별표 3】 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가. 수입물품</p>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th> <th>대상업무</th> </tr> </thead> <tbody> <tr> <td>(28)「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td> <td>○ 수입확인 신청</td> </tr> <tr> <td>(29)「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해당물품</td> <td>○ 수입신고</td> </tr> </tbody> </table> <p>나. 수출물품</p>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th> <th>대상업무</th> </tr> </thead> <tbody> <tr> <td>(9)「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해당물품</td> <td>○ 수출신고</td> </tr> </tbody> </table>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28)「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수입확인 신청	(29)「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해당물품	○ 수입신고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9)「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해당물품	○ 수출신고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신 설〉	〈신 설〉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28)「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수입확인 신청																				
(29)「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해당물품	○ 수입신고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9)「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해당물품	○ 수출신고																				

### 5.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 (제2조·제7조·제9조·제10조 개정)

- ‘타법령 ⇒ 다른 법령’ 등 용어 변경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

## III. 시행일

- 2023. 4. 7. 시행

## |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개정전문\)「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붙임2\] \(신구대조표\)「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붙임3\] \(개정요약서\)「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붙임4\] 개정전문\(별표 1 나. \(2\) HSK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붙임5\] 개정전문\(별표 2 나. \(2\) HSK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붙임6\] 신구대조표\(별표 1 나. \(2\) HSK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붙임7\] 신구대조표\(별표 2 나. \(2\) HSK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 | Contact



박영기 관세사

T 070-4353-1531  
E ykpark@esein.co.kr



유호성 팀장

T 070-4353-1522  
E hsyoun@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3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